

## ○○○씨 전자족보편찬위원회 규약(規約)

### 제 1 장 : 총칙(總則)

제 1 조 : 명칭(名稱)

본 명칭은 ○○○씨 전자족보(CD-ROM) 편찬위원회라 칭한다.

제 2 조 : 목적(目的)

지난번에 ○○대동보를 편찬하였으나 누보(屢報)된 종인(宗人)이 많고 그 이후 변동 사항도 많을 뿐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자족보(CD-ROM)를 제작함으로써 보관과 활용이 용이하며 젊은 세대들의 이해와 종인의 대동단결을 도모하고 소원해가는 한 뿌리, 한 핏줄의 연을 굳건히 하는데 목적을 둔다.

제 3 조 : 소재지(所在地)

전자족보 편찬위원회는 서울시 ○○구 ○○동 123번지 ○○○씨 종친회관에 둔다.

전화 : 02) 321-1234, 321-3421      FAX : 02) 312-1234

### 제 2 장 : 조직(組織)

제 4 조 : 조직(組織)
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둔다.

제 5 조 : 전자족보(CD-ROM) 편찬위원회의 구성(構成)

전자족보 편찬위원회는 대종회장, 편찬위원장, 대종손(大宗孫), 각파 종친회장, 주손 및 지역회장과 편찬위원장이 지명한 약간 명의 종인(宗人)으로 구성한다.

제 6 조 : 전자족보(CD-ROM) 편찬위원회의 기능(機能)

본 위원회에서는 전자족보(CD-ROM) 제작에 따르는 일반 행정, 중요문헌 번역, CD에 들어갈 각종사진 선별(選別), 收單收錢, 單子正單, 校正, 配本 등을 總括하며 실무 추진 본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.

제 7 조 : 편찬위원회의 임원(任員)

본 위원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.

- 1) 고문(顧問) : 덕망이 높고 譜事에 造詣가 있는 원로종인 약간 명을 선임 추대(推戴)하고 자문(諮問)에 응한다.
- 2) 편찬위원장 :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(諸般業務)를 지휘 통솔하고 심의회(審議會) 의장직을 겸임(兼任)한다.
- 3) 부위원장 : 편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10인 이내로 한다.
- 4) 정서위원(正書委員) : 편찬위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하며 모본, 정서한다.
- 5) 교정위원 : 편찬위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하며 전자족보(CD-ROM)에 수록된 全文의 글자를 교정한다.
- 6) 감사(監事) : 편찬위원회에서 선출(選出)한 2인으로 하며 금전출납 및 무전반 사항을 감사하여 결산총회 시 보고한다.

제 8 조 : 심의위원회(審議委員會)

- ① 계보 상 잘못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이를 심의(審議) 결정하기 위하

여 심의위원회를 둔다.

- ② 각과의 문제점은 각과에서 심의한 후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.
- ③ 심의위원은 대종회장, 대종손, 편찬위원장과 편찬위원장이 지명한 10인 이내의 종인(宗人)으로 구성한다.

제 9 조 : 시·도별 전자족보(CD-ROM) 추진위원(推進委員)

- ① 단자 및 단금은 각 과별로 수합(收合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별 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시·도별 지역 추진위원을 선임하여 단자, 단금을 수합하게 한다.
- ② 시도별 추진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되 편찬위원장이 임명한다.

### 제 3 장 : 전자(CD-ROM)족보

제10조 : 편집내용

- ① 전자족보(CD-ROM)는 始祖公 後裔를 총 망라하여 문헌 및 분과조를 上系로하여 각 과별로 世系圖를 附하여 添譜토록 한다.
- ② 순서는 事實, 沿革, 古蹟, 行蹟, 碑誌行狀, 創刊以來의 序文, 跋文, 分派까지의 譜圖 및 世系圖, 寫眞 등을 실고, 난해한 부분은 번역문을 原文 다음에 실는다.

제11조 : 체제(體制)

- ① 글자모양은 명조체로 하고 문단은 七단 八字高 三十六行으로 한다.
- ② 문단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써서 이해를 돕는다.
- ③ 이름(名·諱)은 한자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토를 단다.

### 제 4 장 : 단자(單子) 및 수단(收單)

제12조 : 단자(單子) 작성요령

각 과별로 前譜에 변동사항을 살펴서 起頭의 世數를 定하고 譜名과 페이지를 적어 편집에 混同을 없앤다.

- 1) 휘(諱) 명(名)은 가급적 향렬자로 적는다.
- 2) 방주(傍住)를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男子의 경우  
字, 號, 生年月日, 學位, 經歷, 勳章, 著書, 卒年月日, 墓所, 墓碣, 床石, 墓碣의 撰者와 書者를 적는다.
  - ② 配의 경우  
ㄱ. 死者는 本貫, 姓氏, 卒年月日  
ㄴ. 生者는 本貫, 姓名, 生年月日  
ㄷ. 학위, 경력, 효행, 묘소, 父名, 顯祖(名后), 外祖의 本貫 姓名에 대하여는 생존자, 사망자 같이 쓴다.
  - ③ 生, 卒, 年月日 기재 방법  
卒年이 1900年 以後에 한하여 西紀 干支 음력月日로 적고 부득이 양력으로 적을 때는 陽자를 앞에 쓰고 年月日을 쓴다.(陽○月○日)

- ④ 학력은 최종학력, 경력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(5급), 일반 조합과 주식회사는 理事, 교육공무원은 校監·助教授 이상, 국가자격고시 합격자는 1급이상, 判檢事, 辯護士, 博士, 長官이상의 賞勳을 기록한다. (군·경은 공무원법에 준한다)
- ⑤ 女는 名, 生年月日을 쓰고 出嫁女는 그 옆에 夫名, 本貫, 官職, 父名, 顯祖를 쓰고 子女는 下段에 작은 글자로 本孫과 구별하여 쓴다.
- ⑥ 추가 기록사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를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3조 : 수단(收單)

각과 중친회장과 주손 및 시·도 收單委員은 수합된 單子를 派別로 분류하여 納單者마다 單紙 첫장에 派名, 舊譜페이지, 冠, 童 數 및 金額과 예약 CD枚數를 상단에 적고 呈單者의 名, 주소, 전화번호를 하단에 기록하여 편찬위원회 총무에게 納單하고 영수증을 받는다.

제14조 : 수단기간

수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제 5 장 : 재정(財政)

제15조 : 재원(財源)

본 위원회의 財政은 單子金, 전자족보(CD-ROM) 반질 예약금, 漏譜代, 獻誠金으로 충당한다.

- 1) 單子費는 누보자인 경우 관(冠) 7,000원, 동(童) 3,000원, 女(既婚, 未婚) 3,000원으로 정하고 지난 대동보에 입보(入譜)된 자라도 전자족보(CD-ROM) 재원 마련상 관(冠) 5,000원, 동(童) 3,000원, 女(既婚, 未婚) 3,000원으로 한다.
- 2) 전자족보(CD-ROM) 枚當 예약금은 20,000원으로 한다.
- 3) 漏譜代는 세대당 200,000원으로 하고 4대까지로 한정하며 그 이상자는 헌성금으로 심의위원회서 결정한다.
- 4) 전자족보 분질가격은 예약부수 확정 연후에 책정(策定)한다.
- 5) 모든 수지출은 수지 결산서에 의하여 경리한다.

제16조 : 납부(納付)

單子金, 漏譜代, 헌성금, 전자족보 예약금은 納單 決議書에 의하여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.

제17조 : 예치(預置)

本 편찬위원회의 모든 金錢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위원장 명의로 부위원장 2인의 인감으로 개설하고 통장은 회계총무가 소지한다.

제18조 : 기채(起債)

전자족보(CD-ROM) 편찬위원회의 개설과 동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중회 기금으로 起債하고 추후 收單費로 償還한다.

제19조 : 보수(報酬)

전자족보 편찬에 종사하는 모든 임원은 無報酬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車馬

費,出張費,食代 등은 實費로 補償하며 상근자 약간 명과 그에 대한 보수는 편찬위원회에서 따로 定한다.

제20조 : 변상(辨償)

金錢取扱中 故意 與否를 莫論하고 편찬위원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전액 변상해야 한다.

제21조 : 결산보고

본 위원회는 전자축보가 완료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수익금은 대총회장에게 인계한다.

제22조 : 회계감사

監事는 철저히 監査하여 결산 총회 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.

## 제 6 장 : 부칙(附則)

- 1) 본 규약은 취지문(趣旨文)과 함께 각과 중친회에 配布하여 널리 홍보하고 홍보에 게재, 공고(公告)한다.
- 2) 중앙 및 지방 일간지에 공고하며 ○○○씨 홈페이지 공지사항(共知事項)란에 공고(公告)한다.
- 3) 본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4) 본 규약(規約)은 2004年 5月 7日(중원 대표자 회의에서 통과된 날)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2007年 ○月 ○日

○○○씨 전자축보 편찬위원회